

명예훼손 사례

■ 당사자 간 입장 차이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로 합의

A신문은 신청인인 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제’를 개정하고, ‘영화제 사전심’ 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들을 사실상 ‘사전검열’ 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등급제’는 다른 기관의 업무이고, 영화제 사전심의 방식을 개정하여 사전검열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등급제 및 사전심의 방식 개정’ 부분은 심리 전 신청취지대로 기사가 수정되어 심리 중에는 ‘신청인이 영화제 출품작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사전검열’이라는 표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신청인이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에 의거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제추천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

문을 게재해 줄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잘못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B신문은 신청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수조사했다고 밝힌 주요 사례는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측이 주요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전수라고 표현한 것은 통계적 오류이기에 바로잡고 공식통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중재부의 판단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 손해배상금 3백만원으로 조정성립

C방송은 공무원들이 실리곤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한다고 보도하면서 실리곤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몰래 촬영을 했으며, 신청인이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동조한 듯한 뉘앙스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신청인이 실리곤 손가락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의도에 맞추기 위해 신청인이 했던 말의 순서를 바꿔서 편집해 방송했다고 지적한 후,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에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삭제하고, 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했다라도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

D방송은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신청인 가족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인터뷰에 응한 것은 사건 이해를 위한 참고용으로 답변했을 뿐이고,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되었다며 손해배상 1천만원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들의 초상과 음성 등에 대한 신원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상 신청인들을 특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로부터 촬영·공표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촬영 및 공표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